

전기용품 및 공용품 안전관리 제도

2016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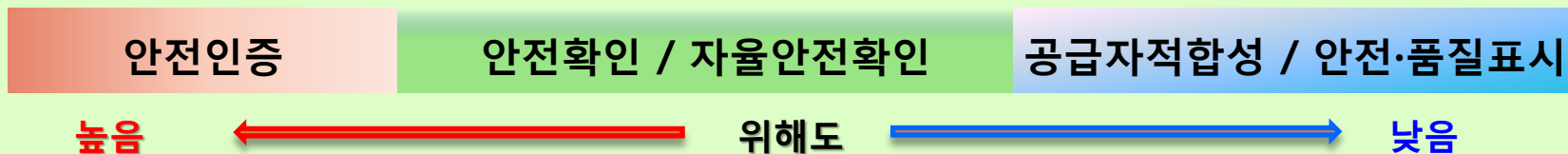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I .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현행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개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이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안전성을 확인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

전기용품 및 공산품 260종을 危害수준에 따라 ①안전인증 ②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 ③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품질표시) 3단계로 차별하여 안전관리를 실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974.1.4, 제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967.3.30, 제정)



Ⅱ.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통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현행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

구분	현행	향후
<p>제품출시전</p>	<p>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p> <p>+</p> <p>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공산품 안전관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p>	<p>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 (시행 : 2017.1.28일)</p> <p>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 관련 부분은 산업표준화법으로 이관하여 관리</p> <p>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2017년 1월 28일 폐지</p>
<p>제품출시후</p>	<p>제품안전기본법 제품 사고조사, 리콜 명령 등</p>	<p>현행과 동일</p>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적용 범위 요약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자

- 제조자
- 수입자
- 판매자
- 대여자
- 구매대행업자
- 수입대행업자
- 판매중개업자
- 포털사업자(신규)

사용자

- 전기사업자(전기용품)
-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업자(전기용품)
- 전기공사업자(전기용품)
- 영업자(공산품)

1.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대해 임의로 부품을 변경하여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발생
- 부품변경 경우, 인증취소 이외 벌칙규정이 없음

(개선내용)

- 안전인증 후 중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현행 인증취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벌칙을 강화
- (개정)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행정처분(인증취소)

2. 일회성 수입 또는 생산 제품 인증제도 신설

(현황 및 문제점)

- 제조공장이 없는 전기용품 수입업자가 외국시장에서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현행 「전안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음
- *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공장검사가 있어 제조공장이 없는 수입업자는 일정수량일 경우 제품시험만으로 안전성을 확인받을 수 있지만 인증 절차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
- 현행 「품공법」은 수입업자가 일정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해 제품시험만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기 도입하여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

(개선)

- 일회성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하는 자에 대해 제품시험만으로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3. 임의 인증제도 폐지를 통한 규제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안전관리 非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 확인을 거쳐, 안전인증
[관련근거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그 밖의 전기용품안전인증)]
- 완제품 제조자가 인증 비대상 부품에 대해 납품 받을 때 과도하게 안전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임의인증제도가 왜곡되어 운영되도록 규제 개선이 요구됨
- 현행 「품공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개선)

- 동 안전관리법에서 임의인증의 법적 근거 삭제
 - * 기 임의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효력은 유효
 - * 승강기류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이관 진행 중

4. 정기검사 주기 일치화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전기용품과 공산품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나, 안전관리 규제수준을 고려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음
 - 현행 「전안법」에서는 매년 1회 실시
 - 현행 「품공법」에서는 2년에 1회 실시 * 「어린이제품안전법」도 2년에 1회

(개선)

-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일치화
 - *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부여하던 인센티브 제도 삭제

5. 인증제품의 표시규정 개선을 통한 부담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전안법」에는 제품과 포장에 인증정보 표시를 규정하고 있어 소형 제품의 경우 표시공간 부족으로 인증정보 표시에 애로가 있음
- 현행 「품공법」에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고, 개별 안전기준에서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하도록 함

(개선)

- 운용요령 또는 개별 안전기준에 따라 일부 조건에서 제품 또는 포장에 인증정보를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

(현행) 제품 + 포장

(개정) 제품과 포장, 일부 조건에서 제품 또는 포장(세부사항은 하위법령 규정)

* 제품의 크기에 따라 표시사항 항목 등 조정

6. 인터넷 판매제품 인증내역 게시 의무 규정 신설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전안법」에는 인터넷을 통해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 인터넷상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불법제품 판매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
- 현행 「품공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개선)

-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인증정보를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도록 규정(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7. 인터넷 포털사업자에게 인증제품 판매 의무를 부과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제품판매자에 대해서는 별칙 규정 있으나, **통신판매 중개자(예, 옥션 등)에 대해서는 별칙 규정이 없으므로 인터넷상에서 불법제품 판매가 근절 되지 않고 있음**

* 통신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음,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

○ 현행 「**품공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어린이제품안전법**」에는 규정있음

(개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①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 ② 온라인 몰에 상품등록시 안전인증 정보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 ③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별칙을 면제(전기용품 : 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공산품 과태료 500만원)

8. 시험기관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안전확인시험기관(또는 안전인증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의 업무정지**로 인하여 적시에 안전확인 시험을 하지 못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

(개선)

-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과징금(3억원 이하)을 정부에 납부하여 제조업체의 불편을 해소

9.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를 통한 규제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자율안전확인대상 신고를 한 제품이 계속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5년~10년)으로 제품시험을 받아 다시 신고 하도록 하고 있으나,
- 대부분의 제품출시 주기가 5년 이내이고,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11.2.5)됨에 따라 리콜제도 도입으로 시장 사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 고려

○ (현행) 안전확인 유효기간 (공산품 5년, 전기용품 5년~10년)

→ (개정)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

10.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규정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시장 사후관리 결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도 표시 사용금지만 할 수 있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음
- 불량제품의 추가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

(개선)

-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및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규정을 마련

11.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신고제도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인증마크 표시 없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공급자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도입('12년) 되었지만, 시험없이 임의로 KC를 붙이는 악용사례 다수 발생
- 현행 「품공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개선)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 **전기용품에 한하며, 공산품은 해당 없음**

12. 기타 벌칙 규정 정비

(현황 및 문제점)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벌칙 규정이 서로 다르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부 규정에 대해 벌칙 규정이 부재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발생

(개선)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벌칙 규정을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

① 벌칙 규정 신설

- 안전인증을 받은 후,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 인터넷판매제품에 대해 인증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② 벌칙 규정 일치화

예시)

-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한 경우
(전기용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공산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일치화)
-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전기용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산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일치화) 등

통합법 시행령 개정(안)내용 소개

1. 제품안전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절차 마련

- (개정이유) 법에서 제품안전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관련 세부규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절차 등을 마련
 - (개정내용) 위원장.간사.서기임명, 회의출석 및 개회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세부사항 규정
- * 동, '제품안전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현행 「품공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과 유사하게 작성

2.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 개정

- (개정이유) 일부 인증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인증기간이 지연되는 등 일시적으로 인증기관의 장비나 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 산업기술시험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개 인증기관을 운영
- (개정내용)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안전인증대상제품 11개 분야 중
 - 6개 분야(1/2) 시험능력적합에서 4개 분야(1/3) 시험능력적합으로 변경하고,
 -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른 국가인증기관(NCB) 요건을 삭제하며,
 - 인증심사원 보유기준을 5명에서 2명으로 변경
 - 외국소재 인증기관의 경우에는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 규정 정비

- (개정이유) 연구, 전시 목적 등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수입 절차 간소화를 위해 면제확인 제도를 법률에서 도입하였는 바, 세부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
- (개정내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면제확인 범위 및 방법을 구체화
- * (현행)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 시험성적서, 제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
- (향후) 면제확인을 통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관세청에 인증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없음

4. 정기검사 관련 규정 정비

- (개정이유) 정기검사 주기가 매년 1회에서 2년 1회로 변경되고,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을 위한 절차 마련이 필요
 - * 현행은 국내·외 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으므로 제조자가 정기검사를 받음
- (개정내용)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
 - 제조자가 안전인증 - 제조업자가 정기검사
 -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 수입업자가 정기검사를 주관
- 정기검사시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사후 관리 부적합 실적이 있는 업체는 불시에 공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
-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부여하던 인센티브* 관련 내용은 삭제
 - * 2년 이상 연속하여 정기검사에 적합한 경우, 그 다음해 정기검사를 1회 면제 (즉, 3년에 1회 면제)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나, 개정법률은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5.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절차 마련

- (개정이유) 안전인증기관 등의 업무정지가 업계에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그 업무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3억이하)을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절차를 마련
- (개정내용) 1일당 납부해야 할 과징금과 납부방법 등을 규정
 - 업무정지 1일당 납부해야 할 과징금 부과기준을 200만원으로 함
 - *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1일당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6. 수수료 규정 정비

○ (개정이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및 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처리를 위한 수수료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필요

* '07년 어린이보호포장신고제도 도입하였으나 수수료 규정 없이 운영
· '16.7월 현재까지 신고건수는 53건, 최근 3년간 신고건수는 년평균 6건

○ (개정내용)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변경) 및 어린이보호포장신고(변경) 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규정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변경) 수수료 : 건당 10,000원(변경 10,000)

* (회계법인의 신고업무 수수료 산출내역) 업무량에 따른 수수료 계산에
· 신고업무 수수료 : 17,115원, 변경업무 수수료 : 12,688원으로 산정됨

- 어린이보호포장신고(변경) 수수료 : 건당 50,000원(변경 10,000)

* 현재, 유사한 업무인 안전확인신고 수수료를 건당 5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7. 과태료 규정 정비

- (개정이유) 서로 다른 두 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서로 다르게 운영하던 과태료를 일치되게 정비
- (개정내용)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사업자기업규모(10, 50, 100, 300명)로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법에서 신규로 도입된 과태료는 유사한 항목과 동일하게 규정
- *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 신고 위반은 생활용품의 안전품질 표시위반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인증정보 게시 위반은 생활용품의 인증표시 위반과 동일하게 규정

(상세사항은 시행령 개정안 참고)

통합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 소개

1.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동일한 체계로 안전관리

- (개정이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모두 규정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에서 사용하는 “모델”, “기본모델”, “파생모델” 용어를 정비
 - 생활용품은 안전기준(고시)에서 모델구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계의 편리성 확보를 위해 시행규칙에서 모델구분 방법 규정이 필요
- (개정내용) 용어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범위를 현행 “전기용품” 에서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으로 변경
- 고시에서 규정하던 생활용품의 모델구분 방법을 시행규칙에서 규정
 - 예) 가스라이터의 모델구분 방법(현행, 국가기술표준원장 고시)
 - 안전인증대상 안전기준 → 부속서 5 가스라이터 → 제3항에서 규정
 - 모델구분: 종류(일반용, 일회용), 형식(전자식, 돌식, 터보식, 토치형), 구조(불꽃높이, 조절방식, 연료탱크, 용적, 외형), 재질

<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예>

분야		모델 구분	
1) 화학	가)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 고무를 포함한다)	용도, 구조, 모양, 종류	
2) 생활	가) 가스라이터	종류, 형식, 구조(불꽃높이 조절방식, 연료탱크 용적, 외형), 재질	
	나) 물 놀이 기구	(1) 제1부 :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종류, 모양, 크기, 재질
		(2) 제2부:공기주입 보우트	종류(인원수),모양,크기,재질
		(3) 제3부 : 수영보조용품 (착용형)	종류, 모양, 크기(연령), 재질
		(4) 제4부 : 수영보조용품 (비착용형)	모양, 크기(연령), 재질
	다) 비 비탄총	(1) 청소년	모양
(2) 성인		모양, 재질	

가) 가스라이터

- 종류
 - 일반용 가스라이터(재충전가능 구조),
 - 일회용 가스라이터(가스 또는 발화석 재충전 불가능구조)

- 형식 : 전자식, 돌식, 터보형식, 토치형식

- 구조
 - 불꽃높이 조절방식 : 조절식, 비조절식
 - 연료탱크 용적 : 10mL 이하, 10mL초과
 - 외형 : 장난감형태, 비장난감형태

- 재질
 - 합성수지 : ABS, 폴리스티렌, 폴리프로필렌 등
 - 금속 : 철, 알루미늄, 합금 등
 - 기타 : 재질명 표시

2.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통합하여 규정

- (개정이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 하나의 법으로 관리됨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통합되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 (개정내용) 현행, 품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자율안전확인대상, 안전품질표시대상 생활용품” 을 현행과 동일한 규제수준인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규정
- * (현행) 안전품질표시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적합 증빙 자료보관 의무 없음
(향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적합 증빙 자료보관 의무 있음
- *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미비점 개선**

○ 법 제5조에서 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파생모델 등록 실시

(방법)

- 제조자 제시모델을 기본모델로 하고, 나머지는 파생모델로 결정하여 인증기관에 인증서 변경을 요청

* 향후에는 제조자 제시모델을 기본모델로 하고, 파생모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함

3. 시험·인증기록 보관 관련 규정 구체화

- (개정이유) 시험·인증기록 보관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전산 기록 관련 규정이 없어 시험인증기관은 종이 문서와 전산 기록을 동시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종이 문서 보관에 어려움이 있음
 - * 현재, 안전인증기관은 약 10만건(약 1,500만 페이지) 정도의 종이 문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보관 장소 등의 제약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정내용) 기록 보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전산기록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문서로 규정하여 보관의 편의성을 제공

4. 일회성 수입 또는 제조제품의 인증 절차 마련

- (개정이유) 수입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는바,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
 - * 안전인증은 공장심사가 있어 외국의 시판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수 없으므로 제품을 소량으로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어려움이 있었음
- (개정내용) 일회성으로 수입 또는 제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장심사와 정기검사를 면제하고,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면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 전기용품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이므로 안전관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100개 이하로 한정하여 제도를 운영

5. 병행 수입업자의 안전인증 절차 마련

- (개정이유)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타 수입업자가 병행 수입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
- *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타 수입업자가 병행 수입을 하고자 할 경우, 리콜 등 사후관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
- (개정내용) 수입업자가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병행 수입업자가 인증을 신청할 경우, 해당 제품의 시험을 일부만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병행 수입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최초 수수료의 10%~30%정도 부담)
- * 수입업자 A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수입업자 B는 제품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수입업자 B명의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음

6. KS인증 제품의 KC인증 면제제도 개선

- (개정이유) 제조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KS인증 받은 전기용품은 안전인증(KC)을 면제하고 있으나, KS인증 마크를 허위로 부착하여 통관 및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
 - KC인증대상 제품은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KC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통관할 수 없으나, KS인증 표시가 있는 제품은 세관장확인 없이 통관
- (개정내용) KS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면제하되, 제품의 사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등록관리가 필요하므로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도록 함
 -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제품인증을 받은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제품시험 과 공장심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

7. 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구체화

- (개정이유) 안전인증 받은 후 제품이 변경될 경우, 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법률에서 인증서변경 의무를 부과하고,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 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함
- (개정내용) 전기용품의 색상, 변압기 2차측의 회로·부품·절연·난연을 위한 재질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
-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인증변경 신청을 하여 인증서를 변경 받아야 함
 -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8.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인증정보 표시절차 규정

- (개정이유)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인증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
- (개정내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할 인증정보*와 표시 방법을 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

* 인증정보 : 인증마크, 인증번호, 제품명, 제조업자명, 수입업자명, 모델명 등 6개

9.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관련 규정 정비

- (개정이유)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 필요
- (개정내용)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 기준 “안전확인 표시사용금지 6개월” 을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로 변경

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 (개정이유)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정부에 신고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

(개정내용)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변경) 절차 및 수수료를 규정

1)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 적합성확인서를 작성 >

- (포함내용) 확인자, 제조업자, 대상제품 등에 대한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
- (첨부서류) 제품설명서, 시험결과서
 1.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험결과서(정격, 전기회로도면,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제품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되어야 함)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확인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	회사명(국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공급자적합성	제품명	제품정격
확인대상 제품	기본모델명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파생모델명	적용안전기준

상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험결과서(정격, 전기회로 도면,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제품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은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

11.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절차

<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 작성 >

1. 공급자 적합성확인서작성
: 전기용품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작성
2.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 작성
: 별지양식에 따라 작성
3.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 협회 접수 (첨부서류 : 공급자적합성확인서)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신청서를 협회에 접수(온라인, 팩스 등)
4. 협회의 확인 및 결재
: 제품명, 정격, 적용안전기준, 제조업자, 신고인 등 작성된 것 확인
사업자 등록번호 이용 신청자료 확인(국세청 홈텍스 이용)
5. 확인증명서 작성
: 확인 후 신고서에 작성된 사실이 이상 없으면 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6. 확인증명서 발급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변경 요청)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	회사명(국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	제조자명	제품명	
	기본모델명	제품정격	
	파생모델명(필요시 별지사용)	적용안전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한국제품안전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9호 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 제외)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는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

일련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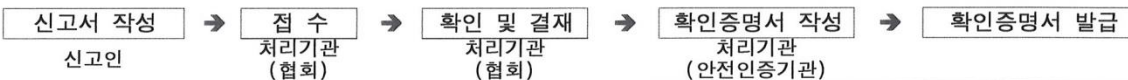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제품안전협회장

직인

처리 절차



12. 기타 법령 통합을 위한 정비

개 정 내 용

- 특허제품, 특수구조용품 등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계의 인증부담을 완화
(안 제12조제2항, 제30조제2항)
- 공장심사는 합격하였으나,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안전인증을 신청하면 공장심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업계의 인증부담을 완화(안 별표 7)
-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은 제품 중 **제품이 소형이거나 수출용 제품에 대해서는 면제확인 표시라벨 부착의무를 삭제**하고(안 별표 8)
 - 면제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작성이 어려운 **“용도설명서”**를 첨부서류에서 **삭제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
- 기타, 「품공법 시행규칙」에서 운영하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절차를 통합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 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

통합법 운용요령 개정(안)내용 소개

1. KS 인증 제품의 안전인증서 및 안전확인신고증명서 발급 절차

- (개정이유) KS 인증제품도 안전 인증서 등을 발급받도록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마련
 - * KC인증은 모델 별로 받지만 KS인증은 범위 별로 받음
- (개정내용) KS인증제품에 대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만 면제하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향후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KS인증 제품은 불법 제품임
 - * KC인증은 없고, KS인증만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서 및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 (신청방법) 안전인증(안전확인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신청 : KS인증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기회로도면 및 부품명세표, 안전인증 표시라벨
- (기본모델 또는 파생모델 결정) 최초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하나의 모델을 기본모델로 하고 나머지는 파생모델로 정하여 신청

○ (세부안전기준 적용배제) KS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KC인증제도에서 적용하는 세부안전기준을 적용을 배제하고 KS인증 범위 내의 제품을 모두 파생모델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KS인증 업체에 대한 부담 최소화

* 이 경우, 인증이 취소될 경우에는 모두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하며, 정기검사시 최근 1년이내의 공장심사 또는 해당 인증을 위한 제품시험결과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면제

2. 수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절차 마련

- (개정이유) 수입업자도 안전인증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업자의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사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
- (개정내용)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인증 받은 제품이 공장심사 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3. 기타 제도 통합을 위한 사안

- 제품심의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여 후보자가 위원으로써 직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해당 안전관리대상 제품이 우리나라에 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절차 마련

향후 추진 계획

-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마련('16. 1~9월)
- 관련 고시(운용요령)안 마련 ('16. 1~9월)
-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16. 9~11월)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16. 11~12월)
- 하위법령 공포('16. 12월) 및 시행('17. 1. 2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 문의처

국가기술표준원 : 043-870-5441(전기용품), 043-870-5451(생활용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8401(전기용품), 031-428-7347(생활용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2-860-1366(전기용품, 생활용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1413(전기용품), 02-2164-1423(생활용품)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02-2102-2627(생활용품)

KATRI : 031-596-5781 (생활용품)

FITI시험연구원 : 02-3299-8001 (생활용품)

KOTITI시험연구원 : 02-3451-7442 (생활용품)

한국제품안전협회 : 02-890-830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불법 불량제품 신고)

감사합니다